

제휴계약서

유한책임회사 알파켓(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합치된 의사로 하기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큐우처 등) 및 제휴 채널을 통해 “을”의 상품을 홍보 및 판매 대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정산 기준 등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제휴계약서상 “직접 입점”이란 “을”이 “갑”의 플랫폼, 큐우처에 직접 가입하고 바우처를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형태의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 ② 제휴계약서상 “간접 입점”이란 “을”이 “갑”에게 판매대행을 의뢰하여 큐우처 내 직접 가입을 생략하고 바우처 발행을 일임하는 형태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 ③ 본 건 계약 체결은 “을”이 “갑”과 직접입점 / 간접입점 계약을 체결함을 뜻한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분담)

본 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직접 입점의 경우

1. “갑”의 역할: “을”의 상품에 대한 마케팅 기획, 마케터 및 고객 유입 채널 운영
2. “을”의 역할: “갑” 플랫폼을 통한 바우처 발행, “갑”을 통해 유입된 고객에 대한 상품의 재고 관리, 발송, 교환/환불 처리 및 일반 고객 CS 전담

나. 간접 입점의 경우

1. “갑”의 역할: “을”의 상품에 대한 마케팅 기획, 플랫폼 내 혜택(바우처) 노출, 마케터 및 고객 유입 채널 운영
2. “을”의 역할: “갑”을 통해 유입된 고객에 대한 상품의 재고 관리, 발송, 교환/환불 처리 및 일반 고객 CS 전담

제4조 (판매 수수료 및 비용)

-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불 광고비, 입점비, 고정 월간 유지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② “을”은 “갑”의 마케팅을 통해 발생한 실제 결제 건에 대하여 제품가의 7%(부가세 별도)를 판매 대행 수수료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2항의 수수료에는 “갑”이 고객 및 마케터에게 지급하는 리워드,페이백 등 모든 마케팅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은 명시된 7% 및 부가세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전항에 기재된 제품가란 실제 고객이 “을”의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가격을 의미한다. 단, 배송비 등 고객이 그 제품 및 서비스를 현실로 인도받기 위함에 있어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본조 제2항에 기재된 수수료 비율은 계약 체결시 이후로 증감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산의 기준)

- ① “갑”은 플랫폼 내에서 고객이 페이백 신청을 하고 실제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을”이 승인한 건들에 대하여만 “을”에 정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품가에 전조 제2항상의 수수료를 곱한 값을 청구가액으로 한다.
- ② 정산의 증빙을 위해 “갑”은 “을”에게 주문번호, 내부 바우처 번호 등 실제 정산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정산일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정산의 증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협력하여 해당 주문 건을 교차적으로 검증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정산 승인 또는 반려 처분을 한다.

제6조 (정산금의 지급)

- ① “갑”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구매확정 건을 취합하여, 익월 8일에 “을”에게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② “을”은 전항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의 청구서를 플랫폼 시스템 절차에 따라 조정 및 확정하고 지정한 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현금 입금한다.
- ③ “갑”은 제1항 발행 기일을 기점으로 2일, 5일 후에 “을”이 청구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일에 걸쳐 메일로 청구금 확정 안내를 통지해야 한다.
- ④ “을”이 제1항 발행 기일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갑”의 청구서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일을 기준으로 당월 거래명세서는 확정되고, 향후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항의 청구서 확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익월 청구서상 결제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 (주문 취소 및 환불의 처리)

- ① 고객의 ‘취소 및 환불 건’ 등은 정산 대상에서 “을”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한다. 이때, “을”은 플랫폼상 거래 조정 및 반려 처분으로 제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청구서 확정으로 승인된 건은 전항 제외권으로 복멸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 1 (제7조 제2항의 취지)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가능 기간, 상품의 배송 및 거래 확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정산 확정 전까지 최대 15일의 거래확정 유예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취소·환불 및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8조 (갑의 손해배상책임)

- ①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의 상호·상표 등을 이용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의 평판 및 브랜드 인지도에 해악을 끼친 경우, “갑”은 이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갑”서비스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전항과 같은 사유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갑”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을의 손해배상책임)

“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제외권을

남용하여 허위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경우, “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당 거래대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전자 포함)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① “을”은 본 제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적인 의무 유지 기간 또는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 전까지 발생한 정산 금액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② “갑”은 전항에 따른 정산금 수령 시, “을”에 관한 전산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 및 “갑”의 플랫폼 운영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거래 상의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조 제1항 단서 및 본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 (비밀유지)

-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 비밀, 고객 정보, 정산 조건 등을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02 년 월 일

[갑]

상 호 : 유한책임회사 알파캣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211-1호

대표자 : 유시현 (인)

[을]

상 호 : _____

주 소 : _____

대표자 : _____ (인)